#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623

발의연월일: 2024. 10. 8.

발 의 자:김위상・박충권・김승수

우재준 • 박성민 • 서범수

김선교 · 강선영 · 이인선

김종양 · 백종헌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그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합의, 집행권원, 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도급사업에서는 발주자,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으로 부터 비용을 지급받고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유용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

한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부 건설업에서는 하청업체가 근로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을 전자조달시스템을통해 관리하도록 하여 임금체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고 있어, 이러한시스템을 하도급 전반에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한 하도급 전반에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임금을 비롯한 대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44조의4 신설 등).

법률 제 호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4(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하도급 대금 수령 및 임금 지급)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을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대금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할 임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6조제2항제2호 중 "제48조"를 "제44조의4, 제48조"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44조의4(전자조달시스템을 통
	한 하도급 대금 수령 및 임금
	지급)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이 발주하는 사업을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
	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
	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
	한 대금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
	여야 할 임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6조(과태료) ① (생 략)	제11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
	승)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	2
2조, <u>제48조</u> , 제66조, 제74조	<u>제44조의4, 제48조</u>
제7항, 제76조의3제2항·제4항·	
제5항·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 반한 자 3.・4.(생 략) 3 (생 략) 3 (현행과 같음)